Faculty Agora 운영규정 5-1-43

규정번호 5-1-43
제정일자 2019.3.1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3차 개정
관리부서 교육과정혁신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여건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대학 교육이념과 중장기 발전 주제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대학 교육과정의 융·복합, 연계 및 교수법의 혁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소통·협력·합의기반의 교수 협의체를 “Faculty Agora”라 한다.

제3조(도입 취지) Faculty Agora를 운영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학과(과정)별 교육과정에 관한 강의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의 변화를 모색한다.
2. 전공 및 교양 각 분야의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교과목별 강의내용의 발전과 전공별 및 과목별 융·복합,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3. 교수자의 전공별 교수법, 강의 및 연구 성과를 교류함으로써 학문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4조(Faculty Agora 구성 및 참가대상) ① Faculty Agora는 미래사회의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협의체로써 우리대학 모든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Faculty Agora 개최 취지에 따라 해당 분야의 모든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그 규모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Faculty Agora 참가대상자는 학부(과)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 취지에 따라 제8조 ①항에서 규정한 연구위원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Faculty Agora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Faculty Agora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01.24.)

② 위원회는 Faculty Agora 운영위원장(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함)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8.08.,2024.7.2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Faculty Agora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Faculty Agora를 통한 연계교육 개설과정의 선정
2. Faculty Agora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의 도출·개발 심사

3. Faculty Agora를 통한 혁신교수법 도입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운영결과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차년 운영 계획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Faculty Agora 운영시기 및 반영) ① 운영시기는 매학년도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08.08.,2024.7.24)

1. <삭제(2022.08.08.)>
2. <삭제(2022.08.08.)>

② Faculty Agora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1. <삭제(2022.08.08.)>
2. <삭제(2022.08.08.)>

제8조(연구위원) ① Faculty Agora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제5조 각 호에 명시된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연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 경비지원) 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Faculty Agora 운영결과 안내) Faculty Agora 운영에 따른 연계 및 융·복합 교육과정 편성 및 혁신교수법 등 결과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 제7조제1항)